

서울고등검찰청

(02-530-3437)

2005. 7. .

수신 박근용 귀하 발신 서울고등검찰청

제목 항고사건 처분 통지 검사 임창진 

김승연 외 2 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
분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| | | |
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처 분 | ①사 건 번 호 | 2005 불항 제 3225 호 |
| | ②연 월 일 | 2005. 7. 2. |
| | ③결 과 | 결정주문 : 항고기각 |
| 이 유 |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,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| |
| 비 고 | ○ 본 항고사건은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<u>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</u> 에 재항고(검찰청법 제10조 제2항)를 할 수 있으므로 재 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 |